

부산지방법원 2020. 9. 16 선고 2020나4147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0. 9. 16 선고 2020나41474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. 14 선고 2019가단2658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장애인센터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승

피고, 피항소인부산광역시 북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국진

변론 종결2020. 8. 19.

판결 선고2020. 9. 16.

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. 14. 선고 2019가단265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41,997,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4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1,997,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"선고받은"부터 제14행의 "보면"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선고받은 점,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2015. 12. 29. 법률 제13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5조 제1항은 '급여비용을 받은 자'를 부당지급급여의 징수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, 이에 의하면 위 69,975,270원을 받은 원고가 징수대상자가 되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에 중대·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임상민

판사신민석

판사양우창